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7호
----------	-------

제출연월일 : 2005. 11.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 개정이유

-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1호 (2004.1.30))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총수를 변경하고,
- 지역교육청 혁신전담팀 구성·운영에 따른 한시정원 22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971명에서 44명이 증원된 3,015명으로 함(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2,971명 ⇒ 3,015명(증 44명)
    -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 변동없음
    -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2,958명⇒3,002명(증 44명)
-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을 기존 9명에서 16명을 증원하여 25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 한시정원의 유효기간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 □ 개정근거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7조, 제19조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1호 (2004.1.30)]

개정 조례안 : 붙임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한다.

제2조중 “2,971명”을 “3,015명”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2,958명”을 “3,002명”으로 한다.

제3조중 “9명”을 “25명”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한시정원의 유효기간) 제3조의 한시정원 유효기간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2,971명</u>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u>2,958명</u></p> <p>제3조(한시정원) 영 제 17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u>9명</u>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제2조(정원의 총수) ..... .....<u>3,015명</u>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3,002명</u></p> <p>제3조(한시정원) ..... .....<u>25명</u>..... .....</p>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04.1.29 대통령령 제8247호)

**제14조(표준정원의 책정)** ①교육감은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이하 “표준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교육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또는 7월에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경계변경 또는 종류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 산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수·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 등이 유사한 다른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참작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에 의할 수 있다.

**제17조(한시정원)** ①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②한시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소멸된다.

④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하여 조정할 수 없다.

⑤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정원의 규정)** ①시·도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②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별로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개정 2004.1.30 교육인적자원부령제824호)

제3조(표준정원)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교육청별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정한다.

③영 제14조제2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정원”이라 함은 표준정원에 보정비율 1.03을 곱하여 산출한 정원(이하 “보정정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매 2년마다 8월중에 산정하여 고시한다.

□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1호)

구 분	표준정원	보정정원	비 고
충청북도교육청	2,971	3,060	

“2,985명”      “2,972명”      “2,985명”      “2,972명”

“2,985명”      “2,972명”      “2,985명”      “2,972명”

“3명”      “3명”      “3명”      “3명”      “3명”      2,985명

2,985명    3명      2,985명    3명      2,985명    3명      2,985명    3명

2,972명    3명      2,972명    3명      2,972명    3명      2,972명    3명

20,000    30,000    30,000    40,000

20,000    30,000    30,000    40,000

20,000    30,000    30,000    40,000

20,000    30,000    30,000    40,000

20,000    30,000    30,000    40,000